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001. 5. 9. 제정

2017. 6. 22. 전문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구성원과 관련하여 발생 하는 성희롱 등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성희롱 등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교 구성원”이라 함은 본교의 교직원, 강사, 학생 등 본교의 교육, 연구, 행정 업무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2. “성희롱 등”이라 함은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행위 및 2차 가해를 말한다.
3. “성희롱”이라 함은 교육, 연구, 행정업무 및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스토킹”이라 함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접근, 편지, 전화, 문자, 컴퓨터통신 또는 SNS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6. “2차 가해”라 함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등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 관계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접촉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성희롱 등 예방교육 실시) 본교는 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센터) ① 본교의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업무는 학생처 양성평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센터는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성희롱 등 피해신고의 접수 및 상담
3. 성희롱 등 피해자 및 신고인 보호
4. 성희롱 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5. 성희롱 등 사건의 중재
6. 성희롱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7. 기타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행정 업무

③ 센터에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상담원은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센터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심의위원회) ① 성희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성희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양성평등센터소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피해자가 직원 또는 학생일 경우 당해 사건에 한하여 직원위원 2인 또는 학생위원 2인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등의 예방을 위한 중요 정책 심의·의결
2. 성희롱 등 사건의 조사 및 성희롱 등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
3. 성희롱 등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징계 등 신분상 조치 권고를 위한 심의·의결
4. 기타 성희롱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의결
5. 성희롱 등 사건의 처리 결과 총장보고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직원위원 또는 학생위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 위원의 수를 재적위원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의 상담원을 원칙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은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센터에 보관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성희롱 등 시정신청) 성희롱 등으로 인한 피해자는 위원회에 이 규정에 의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성희롱 등의 처리절차) ① 센터는 성희롱 등 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 등을 상담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지정하여 심사 및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피신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성희롱 등의 사안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된 사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신속하게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센터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

를 중재할 수 있다.

제9조(성희롱 등의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사건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사건관계자 또는 관계부서 등에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정보의 조사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성희롱 등 사건의 심의과정 중에 신고인, 피신고인 등 사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시정조치) ① 위원회는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조치는 2개 이상 병행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2.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3. 피해자에 대한 사과
 4. 그 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전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징계 등 권고) ①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장 등 임명권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에도 제11조의 시정조치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가중조치 및 가중징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가중된 시정조치 또는 가중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총장 등 임명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가해자가 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신고인이 사건관계자에게 보복을 하거나 보복의 위협을 한 경우
3. 가해자 또는 피신고인이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사건관계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 행위를 한 경우

제14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성희롱 등의 사건에 대해 결정한 사항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이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시정조치 권고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붙여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건관계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성희롱 등에 대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관계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 ②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 ③ 사건관계자는 성희롱 등 사건의 조사 및 처리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유언비어 또는 미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결 사항에 대한 내용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하거나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정한다.

부칙(2001. 5. 9 제정)

이 규정은 2001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2. 7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5. 1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6. 16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 22. 전문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